

#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195
----------	-----

2023. 6. 13.  
복지도시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 6. 1. 강남구청장(자원순환과)

나. 상정의결

- 제312회 강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2023. 6. 13.)  
“ 원안가결 ”

## 2. 제안이유( 제안설명 : 복지생활국장 이호현 )

상위법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항 개정(신설)으로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공중화장실 등에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그 설치 범위를 조례로 정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비상벨 등 안전시설 설치 의무 대상 공중화장실 범위 규정 조항을 신설함.  
(안 제5조제2항)

## 4. 관련근거 및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④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등에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 등은 조례로 정함.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조례 제정안 : 별첨

(2) 입법예고(2023. 5. 4.~2023. 5. 24.) : 의견 없음.

(3)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4) 부패영향평가 : 특기할 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평가

- 분석평가지 특기할 사항 없음.(분석평가 완료)

## 5.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이문성 )

- 공중화장실에 비상벨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7조제4항1)이 신설된 바, 이를 반영하기 위해 금번 개정안이 제출되었음.
- 법 개정 사항을 보면 범죄를 예방하고 긴급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sup>2)</sup>에 비상벨을 의무설치하도록 하였으나, 민간 소유 공중화장실에 비상벨 설치를 강제할 경우 경제적 부담민원 발생 및 민간개방화장실 감소 우려

1) 법 제7조(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등에 비상벨(비상 상황 발생 시 그 시설의 관리자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즉시 연결되어 신속한 대응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설치된 기계장치를 말한다) 등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 등은 조례로 정한다.

2) 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중화장실”이란 공중(公衆)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하는 화장실을 말한다.

가 있고, 모든 공중화장실에 비상벨을 설치하는 것도 과도한 규제 또는 비효율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모든 공중화장실에 대한 비상벨 설치 의무 규정을 두는 것이 아닌 비상벨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 등을 조례에서 규정하도록 하고 있음.

- 이에 개정안은 ① 구청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 ② 영 제2조제2호<sup>3)</sup>의 기관이 설치한 공중화장실 ③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공중화장실에 의무적으로 비상벨등 안전관리시설을 구청장이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음.
- 개정안은 상위법령을 반영한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점 없다고 하겠으나, 본 개정사항이 ‘범죄로부터 안전 확보’와 ‘화장실 이용 편의성 증진 등’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기 위해서는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고 있는 민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가 있어야 할 것임.
- 그러나 2022년 자원순환과(구 청소행정과) 결산 자료를 보면 민간화장실 남·녀 분리사업에 예산현액 2천만원이 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의 참여 저조로 인해 전액(2천만원) 불용처리된바, 금번 개정안이 발효될 경우에는 한 차원 높은 수준의 민간 참여 유도를 위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집행 의지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6.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 7. 토론 요지: “없음”

3) 법 시행령 제2조(공공기관의 범위) 「공중화장실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3.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8. 심사 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10. 기타 사항 : “없음”

붙임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95
----------	-----

제출년월일 : 2023. 6. 1.  
제출자 : 강남구청장  
제출부서 : 자원순환과

## 1. 제안이유

상위법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항 개정(신설)으로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공중화장실 등에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그 설치 범위를 조례로 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비상벨 등 안전시설 설치 의무 대상 공중화장실 범위 규정 조항을 신설함.  
(안 제5조제2항)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1)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④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등에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등은 조례로 정함.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조례 제정안 : 별첨

(2) 입법예고(2023. 5. 4.~2023. 5. 24.) : 의견 없음

(3)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4) 부패영향평가 : 특기할 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평가

- 분석평가지 특기할 사항 없음(분석평가 완료)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비상벨(비상 상황 발생 시 그 시설의 관리자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즉시 연결되어 신속한 대응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설치된 기계장치를 말한다) 등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구청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
2. 영 제2조제2호의 기관이 설치한 공중화장실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공중화장실 등

제6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을 “구청장”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설치기준) ① (생략)  <u>&lt;신 설&gt;</u></p>	<p>제5조(설치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u>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비상벨(비상 상황 발생 시 그 시설의 관리자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즉시 연결되어 신속한 대응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설치된 기계장치를 말한다) 등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구청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u></li> <li>2. <u>영 제2조제2호의 기관이 설치한 공중화장실</u></li> <li>3. <u>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공중화장실 등</u></li> </ol>
<p>제6조(위탁관리 등) ① <u>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u></p> <p>② (생략)</p>	<p>제6조(위탁관리 등) ① <u>구청장</u>-----            -----            -----            -----            -----            -----.</p> <p>② (현행과 같음)</p>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없음

###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4조제3항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3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7억원 미만인 경우. 다만, “한시적”이란 사업기간 1년 이하의 사업을 말한다.

###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3억원 미만

### 4. 작성자

- 자원순환과 행정9급 김현희(02-3423-5993)